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21
----------	-----

제출년월일 : 1994. 12. .

제 출 자 : 대전직할시교육감

1. 제안이유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중개정 법률이 '94. 12. 20. 법률 제 4,789 호로 공포되어, '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 교육·학예에 관한 52건의 조례중
 -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로
 - “대전직할시교육청”을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 “대전직할시교육감”을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현행 모든 조례의 부칙을 제외한 제명, 본문, 별표 및 별지 서식중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로, “대전직할시교육청”을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대전직할시교육감”을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대전직할시교육감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조례 목록

연번	조 례 명	비 고
1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어버지급에관한조례	
2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예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일위에관한조례	
3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4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의공인조례	
5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규의실치및사무직원의경수등에관한조례	
6	대전직할시교육청공적자윤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7	대전직할시교육감격무대리조례	
8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편찬위원회에관한조례	
9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실치및운영조례	
10	대전직할시교육감소속고문번호사조례	
11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의위원실비면상조례	
12	대전직할시교육청기조례	
13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14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입용동에관한조례	
15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입용동에관한조례	
16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17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18	한밭교육박물관실치및운영조례	
19	대전직할시교육연구원실치및운영조례	
20	대전교원연수원실치및운영조례	
21	대전직할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22	대전직할시중학교입학또는전·편입학교고등학교전·편입학예정수수료징수조례	
23	대전학생교육원실치및운영조례	
24	대전직할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 조례 목록

연번	조 례 명	비 고
25	대전직할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출입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조례	
26	대전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27	대전직할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28	대전직할시과학전시회조례	
29	대전직할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30	대전직할시공업계고등학교공공실습소설치조례	
31	대전직할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32	대전직할시교육기자재수리경비소설치조례	
33	대전직할시학원조례	
34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	
35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36	대전직할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37	대전직할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	
38	대전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39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40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	
41	대전직할시교육감산하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42	대전직할시내산업체외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 수당지급에관한조례	
43	대전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44	대전직할시공립국민학교명실유치원설치조례	
45	대전직할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46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47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48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출명수수료징수조례	

大田直轄市教育·學藝에 관한條例의名稱變更에 관한條例案

審 查 報 告

1994. 12. 27.

文教社會 委員會

I.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4. 12. 24. 大田直轄市 教育監

나. 回 附 日 字 : 1994. 12. 24.

다. 上 程 日 字 : 第 3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 5次 文教社會委員會 (94. 12. 27)

上程, 審查, 議決.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行政管理擔當官)

1. 提 案 理 由

“直轄市”를 “廣域市” 로 名稱을 變更하는 內容이 包含된 地方自治
法中 改正法律이 '94. 12. 20. 法律 第4,789號로 公布되어,

'95. 1. 1 부터 施行됨에 따라 教育·學藝에 관한 條例의 關聯規定
을 一括 改正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大田直轄市教育委員會公印條例等 教育・學藝에 관한 52件的 條例中
 - “大田直轄市” 를 “大田廣域市” 로
 - “大田直轄市教育委員會” 를 “大田廣域市教育委員會” 로
 - “大田直轄市教育廳” 을 “大田廣域市教育廳” 으로
 - “大田直轄市教育監” 을 “大田廣域市教育監” 으로 名稱을 變更.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鎮鎬)

- 本 案件은 '95年度 地方自治團體長 選舉등 本格的인 地方自治制 實施를 앞두고 그간 中央執權體制하의 대표적인 行政區域名稱 이란 指摘을 받아온 '直轄市'의 名稱을 地方自治制와도 걸맞고 一般市와도 區分할 수 있는 '廣域市'로 調整키 위한 內容으로써 지난 '94年 12月 20日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2條의 規定에 根據 하고 있음.
- 本 條例의 制定公布에 따라 大田直轄市 教育・學藝에 관한 52件 의 모든 條例가 改正되는 效力을 發揮하겠으며 그 主要內容은 教育・學藝에 관한 52件的 條例內容中 “大田直轄市” 가 “大田廣 域市” 로 “大田直轄市 教育委員會 및 大田廣域市 教育廳” 이 “大田廣域市 教育委員會 및 大田廣域市 教育廳” 으로 調整되는 등 直轄市로 表記된 모든 內容이 廣域市로 變更調整되겠음.

- 以上에서와 같이 本 案件은 本格的인 地方自治制 實施를 앞두고 그간 中央執權體制하의 代表的 自治團體名稱이란 指摘을 받아온 直轄市를 廣域市로 調整키 위한 內容으로써 別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IV. 討 論 要 旨 : 없 음.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없 음.

VI. 審 查 結 果 : 原案대로 可決.

VII.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